

3. 建築士法施行令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資料提供：建設交通部 建築課

- 建設交通部는 '95. 1. 5 建築士법을 개정하는데 이어 동법 시행령 개정(안)을 작성하여 관계부서협의를 거쳐 '95. 3. 24 입법예고하였다.
-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建築士法시행령개정(안)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 - 개정 建築士法에서 建築사시험을 建築사예비시험과 建築사자격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그 시험과목을 建築사예비시험은 建築구조·建築시공·建築계획 3개과목으로, 建築사자격시험은 建築법규와 建築설계 2개과목으로 조정하고,
 - 설계 실무능력을 갖춘 우수한 建築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建築설계(실기) 과목의 배점기준을 상향조정(100점→200점)함.
 - 建築士法에서 단독建築사사무소와 종합建築사사무소의 구분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이의 등록기준 및 업무범위를 폐지함.
 - 현재 建築사협회 회원은 그가 저작한 설계도서를 허가신청전에 建築사협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허가신청후 7일이내에 신고하도록 함.
 - 建築사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建築사시험관리 등 建設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建築사협회에 위탁함.
- 이 개정안은 이해관계인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국무회의의심을 거쳐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
〈참 고 자 료〉

구 분	현 행	개 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응시자격 (건축사법 개정 : '95. 1. 5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·2차시험구분 동시실시 ○ 대졸후 5년이상(전문대졸 7년, 고졸 10년, 기타 14년) 실무경력이 있어야 시험에 응시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사예비시험과 건축사자격시험으로 구분 ○ 예비시험 : 대졸 즉시(전문대졸2년, 고졸4년 경력후) 응시가능 ○ 자격시험 : 예비시험합격후 5~7년 경력이 있어야 응시 가능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험과목 조정 	<p>〈제1차 시험〉</p> <p>건축구조, 건축시공, 건축법규, 건축사(史)</p> <p>〈제2차 시험〉</p> <p>건축계획, 건축설계</p>	<p>〈건축사예비시험〉</p> <p>건축구조, 건축시공, 건축계획</p> <p>〈건축사자격시험〉</p> <p>건축법규, 건축설계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배점기준 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매과목 100점 만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설계과목 200점 만점, 기타과목 100점 만점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건축사사무소별 업무범위 폐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단독건축사(사) : 10층이하로서 1만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의 설계·공사감리만 가능 ○ 종합건축사(사) : 모든 건축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폐지